

<의안번호 제2006- 71호>

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6. 12. 7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6. 12. 7.

2. 개정이유

-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신규 업무 발생 등 효율적인 사무 분장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실과의 설치 : 주민생활지원과(신설)
- 나. 신설 실과의 사무분장<주민생활지원과>
 -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 -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
 - 서비스연계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
 -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

<사회복지과>

-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-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
- 장애인,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

다. 복지관 담당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

- 업무명 :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
- 이관 : 교육문화센터 ⇒ 주민생활지원과

라.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 조정

- 인구정책 업무 전반 : 기획감사실 ⇒ 전략사업추진단
- 전략사업 업무 전반 : 전략사업추진단 ⇒ 기획감사실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관련 조직관리 지침 : 도 행정과-11382(‘06. 9. 19)
- 예산조치 및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주민생활 지원 체계혁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생활 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신규 업무 발생 등 효율적인 사무분장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,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, 서비스 연계 및 기초생활보장,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무분장 되어있고,
- 사회복지과의 사무분장은 노인복지증진, 여성복지 및 청소년 보호육성 장애인 이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,
-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문화센터⇒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고
- 인구정책 업무전반 업무가 기획감사실 ⇒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사무조정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

○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기존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2개과로 사무분장을 나누는 것으로써 업무 내용과 하는 일들이 상호 유사하여 향후 업무의 마찰이나 예상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

- ※ 예)복지업무에서도 노인복지증진 업무는 사회복지과이지만 노인복지 대상자 조사업무와 노인 긴급지원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분장문제

○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